한 · EFTA FTA의 주요 내용

2005. 12

외 교 통 상 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 · EFTA
FTA의 주요 내용

2005. 12

외 교 통 상 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에 부쳐

불과 몇 년 전 한 · 칠레 FTA 추진과정에서 큰 홍역을 겪은 후, 이제는 FTA라는 용어가 신문지상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르내리면서 일반 국민들도 낯설지 않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FTA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만큼 공감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파트너와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우리나라는 세 번째 FTA 대상으로 스위스 · 노르웨이 · 아이슬란드 · 리히텐슈타인 등 서유럽 4개국의 경제연합체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선정하여, 2005년 1월부터 협상을 개시, 2005년 12월에 정식 서명을 하였습니다. EFTA와의 FTA는 우리가 지금까지 체결된 FTA 중 가장 경제규모도 크고, 지역블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EFTA는 사실상 유럽시장과 동일 경제권으로서 EFTA와의 FTA 체결이 거대한 EU 시장에 우리 기업 및 제품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제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한 · EFTA FTA가 발효되면 소비자에게는 보다 값싸게 양질의 제품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생산자로서는 국내외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기회를 맞게 되는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이 한 · EFTA FTA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무역 주도권을 장악한 국가가 당대의 강대국이던 사실을 볼 때, "무역에 의하여 쇠락한 국가는 없다"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2005년에 무역액 5천억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시점에서, 세계시장과의 자유무역을 위한 적극적인 FTA의 추진이 우리 기업들의 시장 확대와 함께,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여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 무역액 1조 달러 시대를 앞당기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한 · EFTA FTA 협상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민간업계와 밤샘 협상을 마다하지 않은 협상 대표단에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5년 12월

통상교섭본부장
김 현 종

차 례

발간에 부쳐 3

Ⅰ. 한 · EFTA FTA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7

1. 협상 경과 9
2.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13

Ⅱ. 한 · EFTA FTA 협정의 주요 내용 21

1. 협정문 구조 23
2. 분야별 협정문의 주요 내용 26
   - 전문 26
   - 제1장 일반 조항 27
   - 제2장 상품무역 28
   - 제3장 서비스무역 36
   - 제4장 금융서비스 40
   - 제5장 경쟁 41
   - 제6장 정부조달 42
   - 제7장 지식재산권 43
   - 제8장 조직규정 44
   - 제9장 분쟁해결 45
   - 제10장 최종조항 46
   - 별도 협정문 47
3. 양허안의 주요 내용 52

Ⅲ. EFTA에 대하여 59

1. EFTA 소개 61

2. 우리나라와 EFTA의 경제관계 66

부록: 한 · EFTA FTA 협정문 목차 72

표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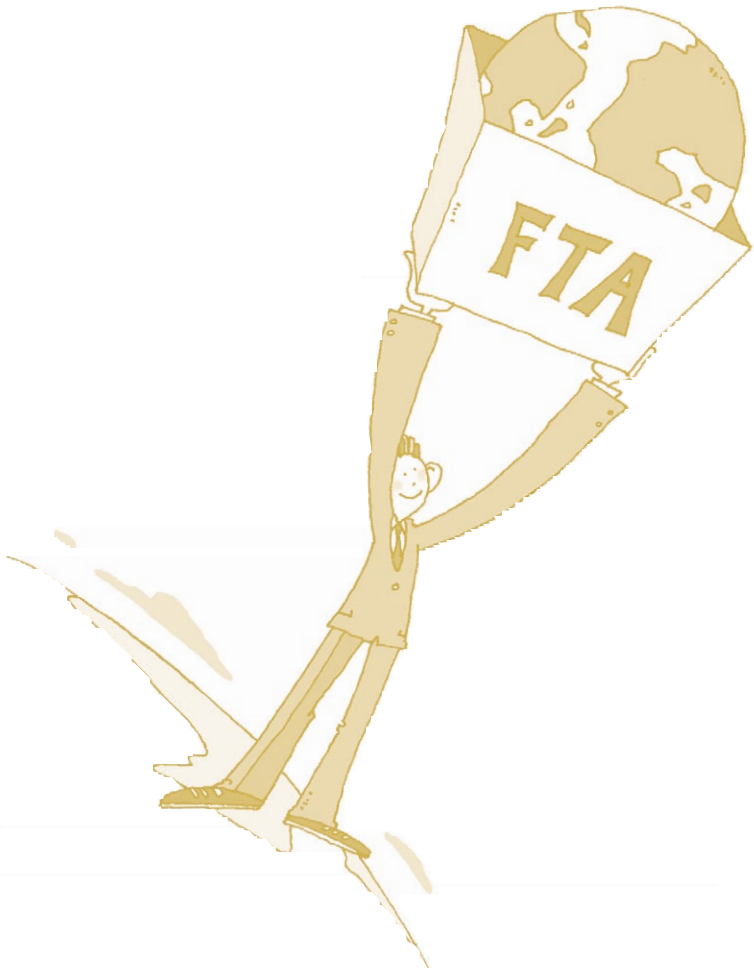
표 I-1. 한 · EFTA FTA의 경제적 효과 15
표 II-1. 우리나라의 상품 양허안 총괄표 53
표 II-2. 각 FTA에서의 양허율 비교 53
표 II-3. 우리나라와 EFTA의 관세율 비교 55
표 III-1. EFTA의 對세계 무역 현황 64
표 III-2. EFTA의 농업 현황 65
표 III-3. 우리나라의 對EFTA 연도별 교역 현황 66
표 III-4. 우리나라의 對EFTA 품목별 교역 현황(2004년) 67
표 III-5. 한 · EFTA 농산물 교역 현황(2003년) 68
표 III-6. 한 · EFTA 연도별 투자 현황 69

그림 차례

그림 I-1. 우리나라의 FTA 체결대상국별 경제 및 교역규모 비교 14
그림 III-1. EFTA의 對세계 무역(2004년) 64

I

한 · EFTA FTA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I. 한 · EFTA FTA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1. 협상 경과
2.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1

협상 경과

■ 한 · EFTA간 FTA는 2004년 5월 14일 개최된 한 · EFTA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측이 FTA 공동연구를 개시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양측 정부, 산업계, 학계 대표 및 EFTA 사무국이 주축이 되어 한 · EFTA FTA 공동연구단(Korea-EFTA FTA Joint Study Group)이 결성되었다.

*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체임. 서유럽국가 중 EU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들로서 인구규모는 작지만 세계 최고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을 자랑하는 전형적인 강소국들의 자유무역연합체임. 보다 자세한 사항은 후술(Ⅲ. EFTA에 대하여) 참고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관세분야를 비롯하여 쿼터 및 각종 비관세장벽 등 개별 국가간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는 특혜무역협정의 일종



한 · EFTA FTA 제4차 협상 (서울, 2005. 7)

■ 2004년 8월과 10월 제네바와 서울에서 각각 개최된 두 차례의 공동연구회의에서 양측간 FTA 추진의 경제적 효과 및 분야별 자유화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특히 2004년 10월 공동연구 2차 회의에서 1년 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2005년 초 FTA 협상을 개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동 연구보고서가 확정되었다.

- 공동연구보고서의 주요 결론 및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가그룹은 한 · EFTA FTA가 양측에 win-win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 증대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가시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 연구보고서에서는 협상의 3원칙이 제시되었다.
    ① 포괄성 :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및 지적재산권 등 모든 분야를 협상대상에 포함
    ② 실질적인 자유화 추진
    ③ 상호 이익의 증진
  · 공동연구보고서는 한국과 EFTA 양측이 2005년 말까지 협정 타결을 목표로 2005년 초 협상을 개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2004년 11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한 · EFTA FTA 추진타당성에 대한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하였다.

■ 2004년 12월 1일 양측간 통상장관회의에서 정부간 협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으며, 2005년 1월(제네바) 공식협상을 개시한 후 네 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7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협상을 끝으로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 이후 협정문에 대한 실무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2005년 9월 제네바에서 협정문이 가서명되었으며 12월 15일 홍콩에서 양측 통상장관들이 협정문이

정식 서명되었다. 향후 양측 국가별 국내 비준절차가 2006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되면 2006년 7월 1일부로 한 · EFTA FTA는 발효된다.

| 추진경과 |

□ FTA 추진 가능성 협의단계

o 2000년 7월 EFTA측이 한 · EFTA FTA 추진의사를 피력한 이후 EFTA측은 우리나라와의 FTA 추진에 적극적인 태도 유지

o 2004년 5월 14일 OECD 각료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 · EFTA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자 FTA 공동연구를 개시하는 데 합의

- 명칭 : Korea-EFTA FTA Joint Study Group
- 목적 : 한 · EFTA FTA 타당성 검토 및 범위 논의
- 구성 : 정부, 산업계, 학계 대표 및 EFTA 사무국

□ FTA 추진 타당성 검토단계

o 2004년 8월 11~1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동연구 제1차 회의 개최

- 양자 FTA의 경제적 효과 및 분야별 자유화 가능성 등 검토

o 2004년 10월 13~15일간 서울에서 공동연구 제2차 회의 개최

- 1년 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2005년 초 협상을 개시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동연구보고서 확정

o 2004년 11월 12일, 한 · EFTA FTA 추진에 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외교부-KIEP-무역협회-농촌경제연구원 공동주관)

o 2004년 12월 9일, 한 · EFTA FTA 추진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 상정 및 심의, 경제부총리 및 관계 장관들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 협상 타결을 추진토록 지시

o 2004년 12월 16일, 제네바에서 양측 통상장관회의시 협상 개시를 선언

- 공동연구 결과에 따라 2005년 중 협상 타결을 목표로 2005년 1월부터 FTA 협상을 개시할 것을 합의

□ 공식협상 진행단계

o 2005년 1월부터 총 네 차례의 협상 진행

- 2005년 1월 12일: 관계부처 대책회의
- 2005년 1월 18~21일: 제1차 협상 개최(제네바)
- 2005년 3월 18일: FTA 추진위원회 상품양허초안 검토
- 2005년 3월 23일: 관계부처 대책회의
- 2005년 3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상품양허초안 검토

- 2005년 4월 4~8일: 제2차 협상 개최(서울)
- 2005년 5월 21일: FTA 추진위원회 상품양허 수정안 검토
- 2005년 5월 23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상품양허 수정안 검토
- 2005년 5월 24일: 관계부처 대책회의
- 2005년 5월 30일~6월 2일: 제3차 협상 개최(오슬로)
- 2005년 6월 28일: 관계부처 대책회의
- 2005년 7월 4~8일: 제4차 협상 개최(서울)

o 2005년 7월 12일, 중국 다롄에서 양측 통상장관회의시 협상 타결을 선언

□ **협상 타결 후속조치단계**

o 2005년 9월 13일, 협정문 가서명(제네바)

o 2005년 12월 15일, 양측 통상장관간 협정문 정식 서명(홍콩)



한 · EFTA FTA 정식 서명 (홍콩, 2005. 1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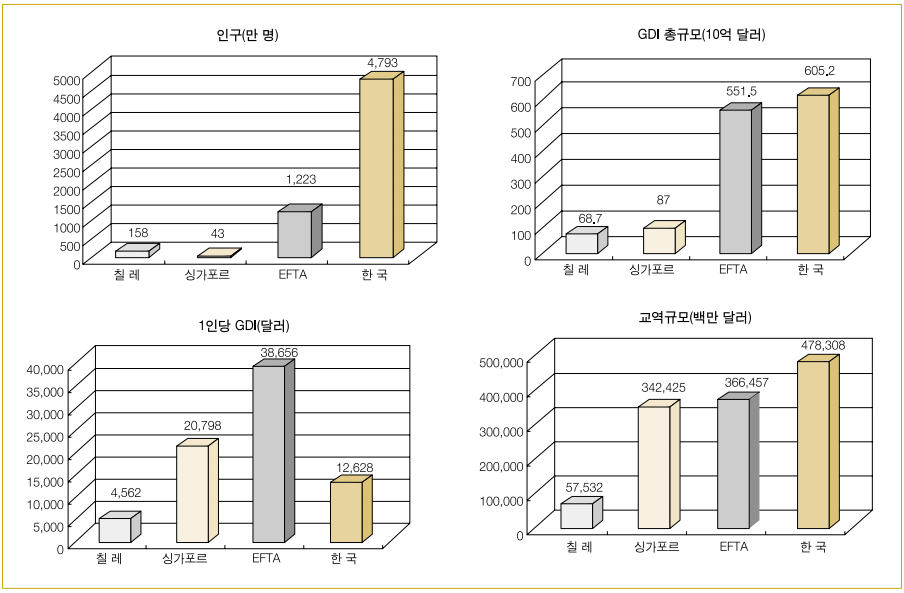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가. 선진경제권과의 FTA로 효과 극대화

■ EFTA는 우리나라가 FTA를 맺은 최초의 선진경제권이자 유럽경제권이며, 지금까지 맺은 FTA 체결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큰 대상국이다.

- 우리나라는 2003년 초 칠레와의 FTA 협상을 타결한 이래 2004년 말 싱가포르와 FTA 협상을 끝내고 2005년 유럽에 소재한 EFTA와 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미주(칠레)와 아주(싱가포르)에 이어 구주에도 한국의 FTA 협상 타결국가가 생겼다.
- EFTA 4개국의 1인당 국내소득(GDI, 2003년 기준)은 3만 8,656달러로서 한국의 1만 2,628달러의 세 배를 능가하고, 그 이전에 협상을 타결한 칠레(4,562달러)나 싱가포르(2만 798달러)보다 소득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준으로 볼 때에도 최고수준이다.
- EFTA는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FTA 대상국 중 가장 큰 경제규모를 지니고 있다. 한편 EFTA도 EU를 제외한다면 14개 FTA 체결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큰 경제규모를 지닌 대상국이다.

그림 I-1. 우리나라의 FTA 체결대상국별 경제 및 교역규모 비교



자료: World Bank; 통계청.

나. 산업의 상호 보완성으로 상호 이익 증가

■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EFTA는 FTA를 통하여 양국간 교역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상호 이익이 크게 증대할 것이다.

- 양측의 교역은 산업내 무역의 비중은 낮고 산업간 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라서 국내 산업구조 조정을 최소화하면서 교역자유화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산업내 무역과 산업간 무역**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은 한 산업내의 원자재-중간재-최종재 사이에 국가간 교역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며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은 서로 다른 산업 사이의 교역을 뜻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산업과 완성차 산업이 서로 다른 국가에 있을 때 부품의 교역이 일어나면 이를 자동차 산업내 무역이라고 하며, 의약품을 수입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면 산업간 무역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동차 산업내 무역의

비중이 큰 경우 FTA로 인한 관세장벽이 철폐되면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은 해외 자동차 부품산업과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므로 국내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자동차를 수출하고 국내에 없는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교역장벽의 철폐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생산이 없는 해외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어서 국내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가 두드러진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4)에 따르면, 모든 관세가 철폐된다고 가정했을 때 EFTA와의 FTA로 우리나라의 GDP는 0.02~0.05%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후생의 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2억 달러 내외가 될 전망이다.
- 한 · EFTA FTA가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 않으나 우리나라 개별 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한 · EFTA FTA로 인해 기타 수송장비업의 경우 약 1.5%, 가공식품업의 경우 약 0.9%의 생산증가가 예상된다.

표 Ⅰ-1. 한 · EFTA FTA의 경제적 효과

	단 기	중 기
GDP(%)	0.02	0.05
후생수준(%)	0.04	0.06
후생수준(백만 달러)	174	244

주: 단기적 효과는 관세철폐에 따른 정태적 효과(static effect)를 가리키며,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이 주된 원천임. 중기적 효과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으로 국내총생산이 증가하는데, 증가된 국내총생산의 일부가 저축되어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자본축적효과(capital accumulation effect)를 고려한 결과임.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4), 『한 · EFTA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FTA 발효시 개선된 교역환경으로 인하여 양측간 교역규모는 13억 달러 내외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주요 수출증가품목은 가공식품과 기타 수송장비이고 농산물, 섬유, 의류, 전기전자 등에 대한 수출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반면 기계류, 금속제품, 가공식품, 화공제품 등의 공산품과 일부 농수산물(치즈, 연어, 냉동고등어 등)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공동연구 결과 제시된 한 · EFTA FTA의 정성적 효과**

- 한 · EFTA FTA는 한국의 對유럽 관계 및 EFTA의 對동북아시아 경제적 유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 정량화하기 어려운 서비스 및 투자와 무역원활화를 통한 이익을 감안하면 경제적 이익은 양측 모두에 훨씬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
- 한국과 EFTA 양측간 경제가 대체로 보완적이어서 구조조정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

다. 우리 제품의 EFTA 시장진출 확대

■ EFTA측은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공산품, 수산물)에 대해 발효 즉시 100%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 우리나라도 EFTA가 원산지인 상품 중 99.1%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율을 최장 7년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였다.
- 다만 농산물 및 수산물 중 민감한 일부 품목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장 10년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현재 양측간 잠재력에 비해 크게 미약한 수준의 교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우리 상품 중에서도 의류, 자동차, 선박, 가죽제품 등 공산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사과, 배, 김치, 민속주, 라면 등의 우리 농산물이 EFTA 시장에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 · EFTA간 교역규모는 2004년에 약 27억 달러로 우리 제20위의 교역상대다. 자동차, 선박, IT 제품, 의료, 플라스틱 · 고무 제품 등이 주요 수출품목이다.

라. 우리 산업의 균형적 발달에 촉매 역할

■ 한 · EFTA FTA는 서비스업을 비롯하여 여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 상품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개방 및 상호 협력을 통하여, 현재 WTO DDA*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시장 개방계획을 시범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전면적인 서비스시장 개방의 완충역할을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EFTA가 경쟁력을 보유한 금융 및 해운 서비스에서 선진기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WTO는 GATT를 대신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출범한 국제무역에 관한 다자협의체제임. 7년 이상 지속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하여 GATT 체제의 한계를 절감한 각국은 1994년 4월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협의체제인 WTO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하였음. WTO는 각료회의를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하되, 일반적으로 각국의 제네바대표로 구성되는 일반이사회 산하에 상품교역이사회(GATT), 서비스교역이사회(GATS), 지적재산권이사회(TRIPS)를 산하기구로 두고 있으며,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기구(DSB)와 각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무역정책검토기구(TPRB)를 상설기구로 설치하였음. WTO는 GATT가 상설기구라기보다는 단지 협정문이었기 때문에 갖고 있던 한계를 뛰어넘어 관할하는 범위가 더 넓고 상호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국제기구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

* DDA(Doha Development Agenda):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종료된 제4차 WTO 각료회의의 결정에 의해 출범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체제임. WTO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거 GATT 체제에서 사용된 라운드라는 이름을 대신하여 도하개발어젠다라고 부르기로 하였음.

- 따라서 우리 경제의 산업간 불균형 발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비교열위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한 · EFTA FTA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관세특혜 확보

■ 양측은 개성공단사업 추진의 의의와 동북아 평화안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

정하여, WTO 규정상의 의무에 위배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역외가공에 대한 특례인정방식으로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에 따라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우리나라산 원자재, 중간재 등이 일정비율만 넘게 되면 우리나라 생산제품과 동일한 특혜관세 혜택을 보게 되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 확보에 기여하게 되었다.
- 또한 개성공단 이외에 향후 북한에 유사한 공단 설립시 동일한 혜택 향유가 가능해졌다.

바. 유럽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인지도 증가

■ 유럽에서 낮은 인지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 우리 상품 및 기업의 유럽 진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한 · EFTA FTA 체결은 우리나라가 무역자유화의 가장 큰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상주의적 통상정책을 펴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유럽국가에서 우리나라(제품)에 대한 브랜드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 양측간 TV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최근 해외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우리 방송프로그램의 유럽시장 진출 확대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어 양측간 문화교류 확대 및 우리의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사. 투자환경 개선으로 투자 활성화

■ 기존의 투자협정을 대폭 개선하여 투자자 보호수준 강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였다.

- EFTA측이 우호적인 투자국임을 감안하여 EFTA로부터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하였다. 특히 한 · 스위스간 1971년에 체결한 투자협정을 대폭 개선하여 대체하고, 이 투자협정을 다른 EFTA 국가들에 확

대하였다.

- 투자자 보호는 물론, 투자자유화 부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EFTA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아.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

■ 한 · EFTA FTA는 향후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 EU는 미국, 일본,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이자 FTA 추진 예정 대상국가 중 하나이다. EU는 산업구조의 보완성이 큰 경제권이며, EU의 선진화된 경제체제는 FTA 체결시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그동안 EU는 우리나라와 EFTA간 FTA가 어떠한 형태로 체결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본바,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개방적 사고와 합리적 접근방식, 그리고 실질적인 시장개방효과를 갖고 있는 이번 FTA의 형태로 판단해 보면 한 · EFTA FTA는 향후 우리나라가 EU와 FTA를 논의할 때 중요한 시금석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한 · EFTA FTA의 발효 이후 예상되던 효과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와 EU는 이러한 제반효과를 근거로 양자간 FTA의 효과를 예측하고 협상을 추진하는 데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 정부의 FTA 전략**

1) 동시다발적 추진으로 FTA 체결진도를 단기간에 만회하여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각 FTA별 서로 다른 효과를 상호 상쇄 · 보완할 수 있도록 함.
2)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거대 ·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지향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흥 유망 시장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함.
3) FTA 내용에 있어 상품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WTO plus적인 FTA를 지향함.
4) 체계적인 정책결정 절차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를 추진함.

II

한 · EFTA FTA 협정의 주요 내용



Ⅱ. 한 · EFTA FTA 협정의 주요 내용

1. 협정문 구조
2. 분야별 협정문의 주요 내용
3. 양허안의 주요 내용

1

협정문 구조

■ 한 · EFTA FTA 협정문은 전문(前文)과 본문 10개 장, 부속서 13개, 그리고 농업 및 투자와 관련한 별도 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7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 협정문의 각 장은 분야별 규율과 합의사항을 담고 있는데,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무역구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 인정, 서비스, 금융서비스, 경쟁,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협력, 투명성, 분쟁 해결 등에 대한 합의사항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 부속서는 상품에 대한 상세한 관세철폐 계획, 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지리적 적용, 적용배제상품, 가공농산물의 범위, 어류 및 수산물, 통신서비스 양허표, 상호 인정,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최혜국대우 예외조항, 정부조달에 대한 접촉선, 지식재산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별도 협정문은 농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아이슬란드, 우리나라와 노르웨이 및 우리나라와 스위스간 양자 농업협정과 우리나라와 아이슬란드 · 리히텐슈타인 · 스위스간 투자협정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문

□ 제1장: 일반조항

□ 제2장: 상품 무역
- 부속서 Ⅰ :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 부속서 Ⅱ : 지리적 적용
- 부속서 Ⅲ : 적용배제상품
- 부속서 Ⅳ : 가공농산물
- 부속서 Ⅴ : 어류 및 기타 수산물
- 부속서 Ⅵ : 관세철폐 유형

□ 제3장: 서비스 무역
- 부속서 Ⅶ : 서비스 양허표
- 부속서 Ⅷ : 서비스 최혜국대우 면제리스트
- 부속서 Ⅸ : 상호 인정
- 부속서 Ⅹ : 통신서비스
- 부속서 Ⅺ :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 제4장: 금융서비스

□ 제5장: 경쟁

□ 제6장: 정부조달
- 부속서 Ⅻ : 정부조달 접촉선

□ 제7장: 지식재산권
- 부속서 ⅩⅢ : 지식재산권 세부사항

□ 제8장: 조직규정

□ 제9장: 분쟁해결

□ 제10장: 최종조항

* 공동선언 (관세인하 일정 관련)
* 의료기기에 관한 대한민국과 스위스에 의한 선언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양해록(서비스 관련)

※ **별도 협정문(투자, 농업)**

□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 · 리히텐슈타인 · 스위스간의 투자에 관한 협정
- 부속서 Ⅰ : 대한민국의 유보조항
- 부속서 Ⅱ : 아이슬란드의 유보조항
- 부속서 Ⅲ : 리히텐슈타인의 유보조항
- 부속서 Ⅳ : 스위스의 유보조항
- 부속서 Ⅴ : EFTA 당사국의 유보조항

□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 부속서 Ⅰ : 한국의 아이슬란드에 대한 농산물 양허표
- 부속서 Ⅱ : 아이슬란드의 한국에 대한 농산물 양허표

□ 대한민국과 노르웨이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 부속서 Ⅰ : 한국의 노르웨이에 대한 농산물 양허표
- 부속서 Ⅱ : 노르웨이의 한국에 대한 농산물 양허표

□ 대한민국과 스위스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 부속서 Ⅰ : 한국의 스위스에 대한 농산물 양허표
- 부속서 Ⅱ : 스위스의 한국에 대한 농산물 양허표

2

분야별 협정문의 주요 내용

협정문의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 문

■ 양 당사국은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당사국간에 존재해 왔던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긴밀하고 영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하였다.

■ 또한 양 당사국은 FTA 체결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공동의 의지와 희망을 천명하였다.

- 자유무역지대가 당사국들에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세계시장에서 당사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임.
-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은 양 당사국간 경제 ·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촉진하는



한 · EFTA 통상장관회의 (2005. 7)

환경을 창출함으로써 유럽과 아시아간 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대에 기여하고 보다 확대된 국제협력이 가능하도록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임.

- 당사국에서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실질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를 공동목표로 함.

■ 양국은 이 FTA 체결이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와 당사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른 다자 및 양자 기구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며 무역자유화가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합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천명하였다.

제1장 일반 조항

■ 이 장은 FTA 협정문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과 규율을 규정하고 있다.

■ 한국과 EFTA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와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5조에 부합하는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함을 규정하고 있다(제1.1조).

>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 상품무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WTO 회원국이 체결하는 FTA 및 관세동맹에 대하여 WTO와 부합될 수 있는 자유화의 수준, WTO 통보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
>
> *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5조:**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WTO 회원국이 체결하는 FTA 및 관세동맹에 대하여 WTO와 부합될 수 있는 자유화의 수준, WTO 통보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

■ 한 · EFTA FTA가 지향하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1조).

-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및 촉진
- 당사국 경제에서 경쟁 촉진
- 정부조달시장의 상호적인 추가 자유화 달성
- 지식재산권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 확보
-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대에 기여

■ 한 · EFTA FTA는 당사국의 영토 · 내수 및 영해와 국제법에 따른 영토 위의 영공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이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는 영해 밖에도 적용된다(제1.2조). 단 노르웨이의 스발바드제도의 경우 상품무역을 제외하고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부속서 II).

■ 이 협정은 한국 및 EFTA 회원국간 무역 및 경제 관계에 적용되며 개별 EFTA회원국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3조 1항).

- 또한 투자의 경우 한국과 아이슬란드 · 리히텐슈타인 · 스위스간 체결된 별도의 협정문을 참조한다(제1.4조).

■ 이 협정의 규정은 WTO와 당사국들이 회원국인 그밖의 국제협정상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제1.5조). 또한 이 협정에 의하여 규정된 무역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다른 특혜협정의 유지 및 설립을 금지하지 않는다(제1.7조).

제2장 상품무역

가. 적용범위

■ 이 장은 GATT 1994*에서 규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과 EFTA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HS 25류에서 97류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부속서 III에서 규정된 품목 제외), 가공농산물(부속서 IV에서 규정한 품목의 경우), 그리고 어류 및 그밖의 수산물(부속서 V에서 규정한 품목의 경우)에 적용된다(제2.1조 1항).

- 농산물(HS 1~24류)의 경우 한국과 아이슬란드, 한국과 노르웨이, 한국과 스위스 연방간 체결된 별도의 양자협정에 따른다(제2.1조 2항).
- 본장과 관련된 부속서에는 적용대상품목과 제외품목을 담고 있다. 또한 부속서 수산물 규정에는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일정을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 완전철폐(B1), 5년 이내 완전철폐(B2), 7년 이내 완전철폐(B3), 10년 이

내 완전철폐(B4), 관세 할당*(TRQ), 향후 재검토(R)로 구분하고 있다.

* GATT 1994: 1949년에 출범하여 WTO 출범 때까지 전 세계 다자간 무역을 규율한 GATT와 구분하기 위하여 WTO 체제하의 상품교역에 관한 협정을 GATT 1994로 부르기도 함.

*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은 일정 수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관세와 쿼터를 혼합한 수입규제제도임.

나. 시장접근

■ EFTA는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공산품, 수산물)에 대하여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86.3%의 즉시철폐를 포함하여 96.6%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품목에 따라 최대 10년 이내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할 것을 약속하였다. 관세의 기준세율은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로 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B1(3년 철폐)은 임산물을 포함한 공산품 381개와 수산물 7개를 포함하여 총 388개(전체의 3.8%)이며, B2(5년 철폐)는 수산물 101개를 포함하여 총 395개(전체의 3.9%)에 달한다. B3(7년 철폐)은 138개(전체의 1.4%)이며, B4(10년 철폐)는 주로 수산물 102개를 포함하여 총 123개(전체의 1.2%)에 달한다.
- 가공농산물의 경우 과반수 이상인 187개 품목을 10~50% 관세인하품목으로 하였으며 수산물 32개 품목을 포함하여 총 61개(전체의 0.6%)는 재검토대상(R)으로 하였다.

■ 이밖에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양측간 상품의 교역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수출입을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 외국산 상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국내산 상품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비차별원칙으로서 GATT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WTO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임. 한 · EFTA FTA는 GATT의 내국민대우 규정을 따름.

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과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WTO 협정」(TBT 협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 당사국들은 국제표준의 수용과 적합성 평가기관의 상호 인정* 촉진을 추구한다. 당사국들은 협정 발효일 이후 3년 이내 공동위원회를 통해 적합성 평가의 결과에 대한 수용에 관하여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추가조치를 협의하기로 하였다(제2.8조 4항).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 TBT): 국가간에 서로 다른 표준화 절차를 사용하게 되면 이는 사실상 국제무역에 저해요소가 됨. 이를 TBT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있음.

* 상호 인정(Mutual Recognition): 상대방 국가의 적합성 평가기관이 발부한 적합성 인정 시험결과 증명서를 다른 당사국이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을 말함. 이와 관련한 협정을 상호 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이라고 함.

■ 농수산물의 교역과정에 중요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는 WTO상의 규범(SPS 협정)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였다.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동 · 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 음료 · 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되는 조치로서 SPS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GATT 체제하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됨.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자의적으로 남용될 경우 부당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보호무역주의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가 있음.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이 제정되었음.

라. 무역구제조치

■ 반덤핑조치와 관련해서 당사국들은 「반덤핑에 관한 WTO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 다만 개시 이전에 당사국끼리 사전 협의를 하고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도 '낮은 관세 적용'의 원칙*을 준수하기로 하여 WTO 반덤핑 규정이나 한 · 칠레 FTA에서보다 반덤핑 프렌즈그룹*의 주장을 더 수용하는 WTO plus 수준의 내용에 합의하였다.

- 반덤핑 혐의 판정을 위한 조사 개시 이전에 혐의대상이 된 상품을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 협의를 거친다.
- 협정 발효 후 5년이 경과한 때, 반덤핑 발동 가능성의 유지 필요성을 공동위원회에서 검토하며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년 단위로 공동위원회에서 검토한다.

> * **반덤핑 조치(anti-dumping measure):** 수출국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여(이를 덤핑이라고 함)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을 경우, 수입국에서 이 가격차를 상쇄하기 위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말함.
>
> * **낮은 관세 원칙(lesser duty rule):**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경우 덤핑마진(정상가격－수출가격)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도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러한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원칙임.
>
> * **반덤핑 프렌즈그룹(Anti-dumping Friends Group: AFG):** 현행 반덤핑제도의 발동요건, 산정방식 등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면서 반덤핑조치 사용국이 반덤핑조치를 남용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들임.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싱가포르, 홍콩, 태국, 브라질,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대만 등이며 제안서 내용은 참여국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지만 낮은 관세 원칙과 네거티브 덤핑마진(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을 0으로 간주하는 제로잉(Zeroing)을 금지하는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보조금 및 상계 조치와 관련해서 당사국들은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WTO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 다만 개시 이전에 당사국끼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협의 판정을 위한 조사 개시 이전에 조사대상이 된 상품을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30일 동안의 기간을 둔다. 당사국이 통지 수령 후 10일 이내에 요청할 경우 협의는 공동위원회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제2.9조 2항).

> * **보조금(Subsidies):** GATT 1994에서는 보조금을 엄격히 정의하고 있는데, 재정적 지원(financial contribution)의 공여, 회원국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public body)이 제공한 기여, 그리고 기여로 인한 혜택의 제공이라는 3대 요소를 구성요소로 규정하고 있음. 보조금에는 지역개발보조금, 환경 및 R&D 보조금 등과 같은 허용보조금과 수출보조금 및 수입대체보조금과 같은 금지보조금이 있으며, 조치가능보조금이라는 중간영역이 있음. 조치가능보조금의 경우 국내산업의 구체적 피해사례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함.
>
> * **상계조치(Countervailing Measures):** 상대방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상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가 야기된 경우 이러한 보조금에 대항하여 수입국이 해당 상품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가하는 조치를 말함.

■ 이 FTA 발효 이후 관세 인하 및 철폐의 결과로 상품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또는 피해의 우려)의 실질적 원인이 될 경우 수입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양자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FTA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 *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s):** 특정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입국이 당해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수량 제한 등으로 취하는 수입규제조치의 하나임. 반덤핑이나 상계관세가 수출국의 WTO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임에 반하여 세이프가드는 수출국의 합법 여부를 떠나 수입국에서의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이 협정에서 규정한 대로 진행하던 추가적인 관세 인하를 중지하거나, 조치를 취할 당시 당해 상품의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협정 발효일 직전에 적용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중 낮은 수준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2.11조 4항).
-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기간은 1년이며, 최대 추가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검토되며 조치 종료 후 최소 3년 동안 종전에 그러한 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도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제2.11조 5항)고 규정하여 EFTA · 멕시코 FTA의 경우를 준용하였다.

- 한편 이러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와는 별도로, GATT 제19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 등 WTO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으로서 누리고 있는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기존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제2.11조 2항).
- 그밖에 협정문은 공동위원회를 통한 사전해결절차, 조치 종료 후 관세율 수준, 잠정 긴급조치의 부과조건, 조사기한 및 공동위원회에서의 연장 재검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그 외 상품무역과 관련한 제2장에서는 국제수지의 위기시 WTO 규정을 준수하고, 국영무역기업, 일반적 예외 및 안보 예외와 관련하여 GATT 1994의 조항이 이 협정문의 일부가 됨을 밝히고 있다.

- 국영무역기업의 경우 한 · 칠레와 한 · 싱가포르 FTA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한 · EFTA FTA에서는 EFTA · 싱가포르 FTA, EFTA · 멕시코 FTA의 전례에 따라 GATT 1994 제17조의 규정을 따르기로 하였다.

마. 원산지 규정(제2.2조 및 부속서 Ⅰ)

■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에 관한 규정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다.

- 원산지 규정은 원산지 상품의 요건과 영역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관절차는 원산지의 증명, 행정협력을 위한 절차 및 관세협력을 규정한다.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이란?

- 일반적으로 '원산지'라 함은 어떤 제품이 생산 · 제조 또는 가공된 국가, 즉 제품이 태어난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제품의 국적이라고 말할 수 있음.
- 원산지 규정은 원산지를 결정하는 규정을 말하는데, FTA의 성공적인 작동을 위해서 매우 중요함. FTA의 경우 당사국 사이에는 무관세가 성립되지만 당사국 각각은 제3국에

대해서 자기 고유의 관세를 부과함. 이러한 구조 때문에 원산지 구별이 필요함. 예컨대 비당사국(제3국)에서 A 당사국으로 수입된 물품은 A 당사국의 관세율 체계에 따라 관세가 부과됨. 이 관세율 체계가 B 당사국과 다를 경우 처음의 A 당사국에서 B 당사국으로 이 상품이 이동하면 B 당사국의 관세율 체계에 따라 다시 관세가 부과(또는 환급)되어야 함. 따라서 당사국 내에서의 상품이동에서도 원산지가 FTA 체결국의 경우에는 무관세 원칙이 적용되고 비당사국 원산지의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됨. 참고로 관세동맹의 경우에는 공동대외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없음.

■ 원산지 기준 기본원칙

- 한 · EFTA FTA 협정에서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당사국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않은 재료를 통합할 경우 당사국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 경우, 또는 특별히 지정한 재료로 획득된 상품의 경우에 한한다(부속서 I 제2조).
- 보통 HS 1~24류까지의 농 · 수산물의 경우 완전 획득된 상품의 경우 당사국 원산지로 인정된다(부속서 I 제4조).
-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상품의 경우 당사국 원산지로 규정되는데, 이때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상품이 다른 상품의 제조에 사용될 경우 그 상품에 통합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부속서 I 제5조).
- 또 HS 50류에서 63류의 경우 사용된 기초 섬유재료의 총중량이 사용된 모든 기초 섬유재료의 총중량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외의 경우에는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비원산지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부속서 I 제5조).
- 원산지 판정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원산지 결정가격은 공장도(ex-work)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
- 그 외 보존공정, 포장, 세척, 페인팅, 도정, 착색, 연마, 단순 혼합, 분해, 도살 등은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공정으로 간주되어 이러한 공정을 거친 비원산지 상품은 당사국 원산지로 인정될 수 없다(부속서 I 제6조).
- 영업원칙과 관련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은 당사국에서 비당사

국으로의 수출입 없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따라서 비당사국으로부터 재수입된 상품은 원칙적으로 비당사국이 원산지로 간주된다(부속서 I 제12조).

- 협상과정에 EFTA가 주장하였던 관세환급 금지는 협정문에 반영하지 않아, 우리측의 관세환급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게 되었다.

■ 한편 한 · EFTA FTA의 경우, 역외가공조항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부속서 I의 부록 4). 또한 개성공단 이외의 향후 남북합작사업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도 함께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같은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즉 부속서 I의 부록 4에 명시된 HS 6단위 267개 품목*에 대해서는 당해 당사국에서 수출되고 추후 그 당사국에 재수입된 재료에 대하여 당사국 영역 밖의 지역, 예를 들어 개성공단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부속서 I의 부록 4, 2항).

* 역외 가공(outward processing): 역내 생산(1단계)→역외 가공(2단계)→재수입 후 역내 최종생산(3단계)과 같은 생산단계에서 이전의 역내 부가가치(1단계)를 역외 가공 이후의 역내 부가가치(3단계)와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영역원칙으로부터 면제' 라고 불리기도 함.

* 협정 발효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부록의 규정과 이행을 점검할 것임. 주요 인정품목은 HS 62류(메리야스, 뜨게질 편물 외 의류), 61류(편물 의류와 그 부속품), 91류(시계 및 부품), 84류(원자로 · 보일러 등), 85류(전기기기 등), 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등임.

바. 통관절차(제2.2조 및 부속서 I)

■ 원산지 신고방식(제15조)

- 한 · EFTA FTA에서는, 통관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인보이스(invoice) 신고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 원산지 검증방식(제24조)

- 한 · EFTA 협정문 통관절차에서는 기존의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채택하고 있던 직접검증방식과는 달리 간접검증방식을 도입하였다.
- 원칙적으로 수출국의 세관당국이 수출자/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수입국의 세관당국은 수출자/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대신, 수출국 세관당국의 현지조사시 수입국 세관직원이 검증과정에 참관(observation)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수입자의 입증 책임(제17조 제8항)

- 수입자가 세관당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국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 부여가 중지될 수 있다.

■ 특혜관세대우의 거부(제28조)

- 물품이 원산지 및 통관절차 규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수입자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및 통관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국은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 관세협력(제30조)

-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기법 등의 정보교류 및 세관공무원간의 인적교류 등 통관절차의 원활화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 관세 및 원산지 소위원회(제32조)

- 공동위원회 산하에 관세 및 원산지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측간 정보교환 및 원산지 규정 검토 등을 수행할 것이다.

제3장 서비스무역

가. 개요

■ 이 장에서 고려되는 서비스는 4장에서 다룰 금융서비스 분야, 그리고 대부분의 항공운송서비스 및 6장에서 다룰 정부조달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외한 전 부문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양측은 GATS를 기본으로 하여 DDA 2차 양허안 수준으로 양허하였다.

-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전기용품), 빌딩 청소업(위생관리용역업, 소독업), 경영 관련 컨설팅서비스 등 DDA 2차 양허안에 추가된 서비스도 포함되었다.

나.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 당사국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비당사국(제3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당사국에 부여하는 최혜국대우의 지위를 부여한다(제3.4조 1항).

- 그러나 부속서 VIII 에 적시한 대로, 시청각서비스나 도로운송서비스, 건설 및 엔지니어링, 항공운송서비스 등에서 EFTA 국가들이 주로 다른 유럽국가들과 시행 중인 각종 협력조치의 경우 MFN 면제분야로 인정하였다.

> *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MFN): 모든 국가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WTO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임. GATT 제1조, GATS 제2조, TRIPS 제4조에 규정됨.

■ 이러한 MFN 예외 인정과 관련하여, GATS 제5조의 규정에 따라 FTA에서 MFN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는 여타 FTA에서 부여된 혜택을 협상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획득하였다.

■ 시장접근*(GATS 제16조), 내국민대우(GATS 제17조)는 GATS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제3.5조, 제3.6조).

> * 시장접근(market access):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업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특히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공급자가 원하는 공급형태에 따라 외국서비스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함.

- 자격, 표준 또는 면허 등과 관련하여 GATS 제16조 및 제17조의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를 넘어서는 시장개방 약속을 의미하는 추가적 약속(additional commitments)은 GATS 규정을 따르기로 함(제3.7조)

다. 서비스시장 개방분야 약속

■ 서비스시장의 개방분야를 규정하는 구체적 약속의 양허표는 부속서 VII에 규정하였다(제3.16조 3항).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 자연인의 이동을 의미하는 Mode 4는 양허하지 않았다.

* 서비스 양허표의 작성은 개방분야들을 열거하는 방식(Positivie 또는 GATS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양측은 현재 DDA 서비스협상 과정에 제출된 DDA 제2차 양허안을 기초로 서비스 양허표를 작성하였다.

* 서비스 거래시 공급자와 수요자의 소재에 따라 서비스 무역은 다음의 네 종류로 구분됨(GATS 1조2항).
  i) Mode 1(국경간 공급):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의 경우를 말함. 송금 등 은행거래가 대표적임. 서비스 수요자나 공급자의 공간이동이 없는 경우임.
  ii) Mode 2(해외소비): 해외관광여행이나 환자가 외국병원의 진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가는 경우와 같이 서비스 수요자가 서비스 공급지로 이동하는 경우임.
  iii) Mode 3(상업적 주재): 호텔 체인이나 해외보험회사의 국내지사와 같이 서비스 공급자가 수요지로 진출하는 경우임.
  iv) Mode 4(자연인의 이동):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국경간 이동임. 예를 들어 의사나 회계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 영업하는 경우를 지칭함.
  상품무역의 경우 공급자의 이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 데 반해 서비스의 경우는 iii)이나 iv)와 같이 공급자가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비스무역은 상품무역과 다른 특징과 규율이 필요한 것임.

* 수평적 양허(Horizontal Commitments) 분야에 기재된 Mode 4 관련 사항 i) 기업내 전근자(대한민국에 설립된 자회사 · 지사 또는 제휴기업을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피고용인인 자연인이며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 그 기업에 고용된 자로서 임원, 고위관리자 및 전문가)의 경우 최장 3년간 체류가 가능하며 조건이 충족된다면 체류기간의 갱신이 가능함. ii) 기업인 방문자(우리나라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업적 주재 설립의 책임이 있는 임원과 고위관리자로서, 우리나라에 서비스 공급자의 사무소, 지점, 자회사 등이 없어야 하며 직접적인 판매 또는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않는 자연인)와

서비스 판매자(우리 영토 내에 소재하지 않으며 보수도 지급받지 않는 자연인으로서 서비스 공급자를 위하여 서비스 판매를 교섭할 목적으로 그 서비스 공급자를 대표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자이며, 일반대중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자)의 경우 최장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함.

■ 통신서비스와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적용되는 시장접근 · 내국민대우 및 추가적 약속은 부속서 X과 XI에 규정된다(제3.16조 4항).

- MFN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 시청각서비스 공동제작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의 무역역조를 시정하고 우리 방송프로그램이 EFTA의 2차 유통망을 활용하여 다른 유럽국가에도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라. 상호 인정 및 자연인의 이동

■ 상호 인정과 관련하여 당사국간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당사국이 비당사국에서 습득된 교육, 경험,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하는 경우 다른 당사국이 이와 관련하여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다른 당사국의 영토에서 습득한 자격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다른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제3.9조 1항).
- 부속서 IX는 당사국들이 서비스 공급자의 교육, 경험, 자격, 면허, 증명 또는 인증의 상호 인정을 촉진하도록 권장하며, 그 진전상황을 공동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있다.

■ Mode 4(자연인의 이동)의 경우,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GATS 부속서」에 의하여 규율된다.

마. 기타

■ 국내 규제(GATS 제6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GATS 제8조 1항 · 2항 및 5항), 영업 관행(GATS 제9조), 국제수지 보호(GATS 제12조 1항 및 3항), 일반적 및 안보상의 예외(GATS 제14조, 제14조의 2), 투명성(GATS 제3조 1항 · 2항 및 제3조의 2) 등은 GATS 규정을 따르기로 하였다.

* **국내 규제(domestic regulation):** 국내시장에서의 각종 규제는 그것이 무역을 저해할 목적으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음. 서비스 시장의 경우 생산물이 눈에 보이지 않고 수요자 및 공급자의 긴밀한 관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음. GATS 6조는 이러한 경우 국내규제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규율하고 있음. 예를 들어 국내 회계기준이 외부 회계서비스 공급자를 차별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음.
* **영업 관행(business practices):** 어떠한 국내적 영업 관행이 서비스산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서비스무역을 막을 수 있음. 이러한 경우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 당사국은 요청사항에 대하여 진지하고 우호적으로 조사하며 각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임.
* **국제수지 보호(restrictions to safeguard the balance of payments):** 어느 서비스부문의 개방으로 급격한 자본 유출이 있는 경우라도 그러한 상황을 제어하기 위해 자본의 흐름을 규제해서는 안됨. 국제수지상의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경우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그 조치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다른 제한과 조건을 따라야 함.
* **투명성(transparency):** 모든 회원국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다른 회원국의 의문사항에 대한 답을 위한 문의처를 갖고 있어야 함. 또한 관련된 국내법령이 바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WTO에 보고해야 함.

제4장 금융서비스

가. 개요

■ 이 장에서는 금융서비스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별도의 언급이 있는 경우 제3장(서비스무역)의 내용을 따른다.

- 단 정부기관의 금융서비스 조달의 경우 이 장에서 언급하는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당사국간 금융서비스 교역에 있어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최혜국대우, 규제 투명성,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당사국간 금융서비스 무역을 자유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 추가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에 설립된 다른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불 및 청산 제도, 증권 또는 선물거래소, 자체 규제기관에 대한 접근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경우 다른 당사국에도 그러한 협정이나 약정을 협상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그러한 인정을 부여할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제4.9조 2항).

나. 금융소위원회 설치 및 분쟁해결절차

■ 당사국은 본 장의 이행과 발전에 대한 감독, 일방 당사국에 의해 제기된 금융서비스문제의 검토, 그리고 분쟁해결절차의 참여 등을 위해 “금융서비스 소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제4.20조).

■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당사국들은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분쟁해결절차를 발동할 때에는 금융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패널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21조).

제5장 경쟁

■ 당사국들은 국내시장에서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영역 내에서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기업활동’의 축소에 노력하고 상호 협력키로 하였다(제5.1조 1항).

* **반경쟁적 기업활동(anti-competitive business conduct):** 지배적 지위에 있는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반경쟁적 기업간 담합 등 경쟁의 방해 · 제한 또는 왜곡을 그 목적이나 효과로 하는 활동을 말함.

■ 당사국들은 반경쟁적 기업활동을 제거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경쟁법을 적용하고, 이를 위해 관련된 집행활동에 대하여 서로 정보교환하기로 하였다. 요청이 있을 때 당사국들의 경쟁당국은 협의를 개시하고 요청받은 당사국은 그 요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하기로 하였다(제5.1조 4항, 5항)

- 필요시 협의는 요청 접수의 30일 이내에 개최되고 공동위원회에서도 협의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과 정보를 공동위원회에 제공한다(제5.1조 6항).

제6장 정부조달

■ 정부조달에 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정부조달에 관한 WTO 협정」(GPA)에 의하여 규율된다(제6.1조).

-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제도에 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정부조달시장의 추가적인 자유화 및 상호 개방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 **정부조달에 관한 WTO 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기업의 상품 · 서비스 · 건설서비스 구매에 있어 절차와 관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WTO 다자규범임. 가입한 회원국만 적용을 받는 WTO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하나로 우리나라는 1994년에 가입하여, 1997년부터 우리 조달시장을 개방하여 오고 있음.

■ 정부조달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당사국들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부조달분야의 규칙 및 규정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책임질 접촉선(contact points)을 명시하였다(제6.2조).

- 우리나라는 재정경제부, 스위스는 경제부, 노르웨이는 현대화부, 리히텐슈타인은 외교부,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재무부가 접촉선의 역할을 한다(부속서 XIII).

■ 당사국이 비당사국에 자국의 정부조달시장에의 접근에 관한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한 경우, 그 당사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다른 당사국에 이러한 혜택의 확대 가능성에 관한 협상을 개시할 것에 합의하였다(제6.3조).

제7장 지식재산권

■ 당사국들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WTO 협정」(TRIPS)에 규정된 의무를 재확인하고, 상대국 국민의 지식재산권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보호되도록 보장함을 규정하였다(제7.1조).

> *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WTO 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규제수단을 명기한 다자규범으로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됨. GATT, GATS와 함께 WTO의 3대 핵심협정임.

■ TRIPS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당사국들은 자국법에 근거하여 이 협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1조 2항).

■ 당사국들은 사회 · 경제 및 문화 발전의 요소로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상대국의 지식재산정책과 경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지식재산분야의 인적 교류, 교육훈련의 증진 등 이 분야에서 당사국들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제7.3조).

■ 특허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아이슬란드 · 리히텐슈타인 및 스위스는 TRIPS 규정상 특허예외사항에 다음을 추가하였다(부속서 XIII 제2조).

- 1) 인간의 치료를 위한 진단 · 치료 및 외과적 방법 또는 동물의 신체에 행

해진 그러한 방법, 2) 식물 또는 동물 변동, 또는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해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제조법은 특허대상에서 제외한다(노르웨이는 자국법에 따른다.)

■ 미공개 정보에 대한 보호에도 유념한다. 의약품 또는 농화학제품의 판매 허가를 위하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려는 것을 금지한다(부속서 XIII 제3조).

■ 산업디자인과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자국의 국내법에 규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스위스 · 리히텐슈타인 및 아이슬란드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 후 지리적 표시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의 채택에 대하여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다(제5조).

제8장 조직규정

■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공동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 공동위원회는 장관 또는 장관이 임명한 고위공무원이 수석대표를 맡은 당사국들의 대표로 구성된다(제8.1조 1항).

■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과 당사국간 무역장벽 및 그밖의 제한적 조치를 추가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 협정의 이행과 추가적인 발전,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소위원회 및 작업반의 업무를 감독하며,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제8.1조 2항).

- 공동위원회는 자신이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 및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매 2년마다 소집된다.

■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들간 모든 공식적인 의사소통 또는 통지는 자국의 사무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제8.2조).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통상부가, EFTA의 경우 EFTA 사무국이 사무국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제9장 분쟁해결

■ 이 장의 규정은 이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적용된다(제9.1조 1항). 이 협정과 WTO 협정상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분쟁은 제소 당사국이 선택하는 분쟁해결절차에서 해결될 수 있다(제9.1조 2항).

■ 분쟁 해결은 당사국간 협의를 거쳐 패널 설치의 순서로 진행된다.

- 만일 관련 당사국간 합의하면 언제든지 주선 · 조정 및 중개 절차를 밟을 수 있다(제9.2조).

■ 협의는 협의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긴급한 사안의 경우 15일 이내)에 비공개로 개최된다. 사안이 협의 요청 접수일 후 60일 이내(긴급한 사안의 경우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중재패널이 설치되어 그 사안을 다루게 된다(제9.4조).

- 각 분쟁 당사국은 요청 접수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1인의 중재패널을 임명하고 양 당사국의 합의하에 1인의 중재패널 의장을 임명하여 총 3인의 중재패널위원을 구성한다(제9.5조 1항 및 2항). 중재패널 합의에 실패할 경우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 WTO 사무총장이 필요한 지정을 한다. 그럼에도 지정에 실패할 경우 양 당사국이 제출한 후보군에서 추첨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제9.5조 4항).

■ 중재패널은 중재패널 설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분쟁 당사국들에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여 당사국으로부터 의견을 서면으로 재청취하고 최초보고서 제출 30일 경과 이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제9.8조, 제9.9조).

■ 최종보고서의 결과에 대해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상대국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판정결과에 대한 이행수단을 확보하였다(제9.10조).

제10장 최종조항

■ 공동위원회에서 양 당사국간 협의로 협정의 개정이 가능하며, 개정된 협정의 발효는 비준 · 수락 또는 승인 문서 기탁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제10.3조).

■ EFTA에 가입하려는 국가는 이 국가와 기존 당사국간의 합의를 전제로 공동위원회가 가입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 FTA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제10.4조 1항). 가입국에 대하여 이 협정은 가입문서의 기탁일 또는 기존 당사국에 의한 가입조건의 승인 중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그 후 두 번째 달 1일에 발효된다(제10.4조 2항).

■ 당사국은 기탁소에 서면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그 통지가 기탁소에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후 발효된다. 단 우리나라가 탈퇴할 경우 탈퇴 통지가 기탁소에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이 협정 자체가 효력을 상실한다(제10.5조 2항).

■ 이 협정은 이 협정을 비준한 서명국에 대하여 2006년 7월 1일에 발효하기로 하였다. 다만 서명국은 적어도 발효일로부터 1개월 전에 비준 · 수락 또는 승인 문서를 기탁소에 기탁하여야 한다(제10.6조 2항).

- 서명국 중 하나는 반드시 우리나라이어야 하며, 노르웨이 정부가 기탁소의 역할을 한다(제10.7조).

■ 이 협정이 2006년 7월 1일에 발효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와 EFTA 개별 회원국이 비준 · 수락 또는 승인 문서를 기탁소에 기탁한 날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그 후 두 번째 달 1일에 발효하도록 하였다(제10.6조 3항).

- 협정 발효 후 문서를 기탁한 EFTA 회원국에 대해서는, 이 협정은 그 문서의 기탁 후 두 번째 달 1일에 발효된다(제10.6조 4항).

별도 협정문

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와의 투자협정

1) 개 요

■ 기업과 투자, 당사국 투자자의 정의(제1조) 및 적용범위(제2조)가 규정되었다.

- 특히 우리측의 요청에 따라 당사국 투자자의 정의에서 지점을 배제하였으며, 법인의 정의에 설립지 기준과 실질적 영업활동(substantial business activities)을 첨가하여 보다 엄밀히 하였다.
- 본 투자협정은 NT 및 MFN과 관련하여 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부문에 포함되는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measures affecting trade in services)에는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다(제2조 2항). 또한 이 협정은 한국과 EFTA 회원국간에 적용되며 EFTA 회원국간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제2조4항).

■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호의적이고 투명한 조건을 창출하고 유지한다(제3조). 또한 자유로운 송금을 허용한다(제5조).

■ 이 협정의 발효기간 중 1971년 4월 7일 체결된 「대한민국정부와 스위스정부간의 투자 촉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은 발효 중지된다.

- 스위스가 기탁소의 역할을 한다.

2) 투자자 보호 강화

■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 · 인수 · 확장 · 경영 · 영업 · 운영 · 청산 · 판매 · 송금 또는 그밖의 처분에 대하여, 자국 투자자 및 자국 투자자의 투자(내국

민대우) 또는 제3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최혜국대우)에 부여하는 대우 중 보다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부여한다(제4조).

- 제3국 투자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혜택에 관하여 협상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제4조2항). 그러나 제3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할 경우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제4조3항), 당사국의 사회정책 또는 경제개발정책에 기초한 보조금의 경우 동일한 혜택을 내국민대우로 부여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이 경우 요청에 대해 호의적인 협의를 할 수 있다(제4조4항).

■ 당사국간 지불 및 자본이동이 어느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의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본이동에 대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긴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조).

- 다만 이러한 조치는 IMF 협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투자와 관련된 핵심인력이 관련 투자의 경영 · 유지 · 이용 · 향유 · 확장 또는 처분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자국의 영토에 일시적인 입국 및 체류를 허가한다(제8조).

- 각 당사국은 국적 및 시민권에 관계없이 투자자 또는 투자가 선택하는 핵심인력이 입국 · 체류 및 근로허가를 받았고 당해 고용이 그러한 핵심인력에게 부여된 허가의 조건 및 시간제한에 합치할 경우 그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건전성 조치(Prudential Measures)는 금융서비스부문의 국내규정 조항을 준용하기로 하였다(제10조).

- 다만 우리측의 요청에 따라 통화 · 환율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취하는 비차별적 조치는 "별도 조항(Monetary and Exchange Rate Policy)"으로 규정하기로 하였다.

■ 투자자 보호 조항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수용 및 보상, 손실에 대한 보상, 그

리고 대위변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였다(제 13, 14, 15조).

- 어느 당사국도 공공의 이익이나 비차별적 기초 및 적법 절차가 아니라면, 또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수용 또는 국유화와 같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수용 및 보상의 경우에는 그 규정을 준용한다(제13조).
- 손실에 대한 보상에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규정한다(제14조).

3) 투자자유화 대상의 명확화

■ 내국민대우의 유보조항을 네거티브시스템*으로 규정하여 투자자유화 대상을 확대하였다(제12조). 부속서 I에 우리나라의 유보조항을 상술하였다.

> *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 자유화품목을 규정하는 방식으로는 통상적으로 포저티브시스템(positive system)과 네거티브시스템이 있다. 포저티브시스템은 적시된 항목만을 자유화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네거티브시스템은 적시된 항목 이외는 모두 자유화하는 경우를 지칭함. 따라서 자유화의 정도는 포저티브시스템보다 네거티브시스템이 더 큼.

■ 부속서에 따르면, 통계상 목적 및 인센티브 검토, 국가안보, 공익 및 공공질서 유지, 제한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 현황 파악, 금융안정, 문화 다양성 및 정체성 보호를 위해 일부 산업에 대한 당사국의 투자를 유보한다.

- 또한 농림축산업 및 관련 제조업의 경우 벼 · 보리 재배업과 육우사육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항공기 사용사업 및 제3장 서비스무역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항공산업분야, 방위산업과 발전, 송전 및 배전 판매사업,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지분 참여, 신금융서비스 등을 이용한 금융상품 또는 자본 거래, 총포 · 도검 · 화약류 관련 사업, 수산업, 가스산업, 원자력산업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한다.

4) 투자 관련 분쟁해결절차

■ 투자자와 당사국간 분쟁의 경우 해결절차를 국제분쟁 중재기준에 따라 규정하였다(제16조).
- 다른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하여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손실 또는 손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투자자는 그 사안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서면 협의요청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은 사안은 해당 당사국의 법원, 행정법원 또는 국제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국제분쟁 제기 60일 전 사전 서면통보가 필요하며 5년의 제척기간을 둔다.
- 우리측 요청에 따라 투자는 이미 행하여진 투자의 경우로 국한하였으며 설립 전 단계의 투자에 대해서는 배제하였다.

■ 금융서비스에서 국제중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FTA 협정 금융서비스부문의 분쟁해결조항에 준용하는 패널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 FTA 협정상의 금융서비스 소위원회가 1차로 심사하여 여기서 결정하지 못할 경우, 국가간 분쟁해결 패널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나.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와의 농업 협정

■ 농업협정은 상품무역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농산물(HS 1~24류 중 일부)에 대한 한국과 개별 EFTA 회원국간 체결한 양자협정을 그 내용으로 한다(제1조).
- 리히텐슈타인의 경우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공국간에 맺은 1923년 3월 29일 관세동맹조약」에 따라 스위스와의 협정이 자동 적용된다.

■ 농업협정의 대상이 되는 기본농산물의 양허에 대해서는 상호 민감품목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관심품목 위주로 양허하여 부속서에 규정하였다(세부내용 후술).

■ 그밖에 양 당사국은 당사국간 농산물 무역의 패턴, 상품의 특수한 민감성

및 양측 농업정책의 발전을 고려하면서 추가적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며(제5조), 상대방이 수출보조를 할 경우 양허품목에 대해 다시 MFN 실행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제8조)을 약속하였다.

- FTA 본 협정의 제2장(상품무역) 및 제9장(분쟁 해결), 부속서 I (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의 대부분 규정을 농업협정에도 함께 적용하기로 하였다.

3

양허안의 주요 내용

가. 상품양허안

1) 개요

■ 한 · EFTA FTA에서는 상품무역에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최대 10년 내에 철폐하되,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 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 EFTA는 양허율 100%이며,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1)]
- 한국은 상품양허에서 총 1만 114개 품목 중 99.1%인 1만 19개 품목을 양허하고 86.3%에 해당하는 8,726개 품목을 FT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 EFTA가 칠레나 싱가포르에 비해서 임산물과 수산물에서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 한국의 즉시 철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특히 수산물의 경우 B2(5년 철폐)와 B4(10년 철폐)의 비중이 매우 높음.

1) EFTA는 기본적으로 공산품, 수산물 및 가공농산물을 자유교역대상으로 하고, 기본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자간 협정을 체결함.

표 II-1. 우리나라의 상품 양허안 총괄표

구 분	전품목 (기본농산물 제외)	공산품 (임산물 포함)	수산물	가공농산물
즉시 철폐 (A)	8,726(86.3%)	8,568(91.1%)	110(27.1%)	48(15.8%)
3년 철폐 (B1)	388 (3.8%)	381 (4.1%)	7 (1.7%)	-
5년 철폐 (B2)	395 (3.9%)	294 (3.1%)	101(24.9%)	-
7년 철폐 (B3)	138 (1.4%)	132 (1.4%)	6 (1.5%)	-
10년 철폐 (B4)	123 (1.2%)	-	102(25.1%)	21 (6.9%)
관세 인하(10~50%)	187 (1.9%)	-	-	187(61.5%)
TRQ	1 (0.0%)	-	1 (0.2%)	-
향후 재검토 (R)	61 (0.6%)	29 (0.3%)	32 (7.9%)	-
양허 계	10,019(99.1%)	9,404(100%)	359(88.4%)	256(84.2%)
양허 제외 (E)	95 (0.9%)	-	47(11.6%)	48(15.8%)
총 계	10,114(100%)	9,404(100%)	406(100%)	304(100%)

자료: 외교통상부

표 II-2. 각 FTA에서의 양허율 비교

(단위: %)

구 분		전체	공산품	임산물	수산물	농산물
한 · 칠레	한국	양허율: 99.8 즉시 철폐: 87.2	양허율: 100 즉시 철폐: 99.9	양허율: 100 즉시 철폐: 58.2	양허율: 100 즉시 철폐: 69.5	양허율: 98.5 즉시 철폐: 15.6
	칠레	양허율: 99.0 즉시 철폐: 41.8	양허율: 99.8 즉시 철폐: 30.6	양허율: 100 즉시 철폐: 100	양허율: 100 즉시 철폐: 99.0	양허율: 94.2 즉시 철폐: 92.9
한 · 싱	한국	양허율: 91.6 즉시 철폐: 59.7	양허율: 97.4 즉시 철폐: 68.8	양허율: 82.9 즉시 철폐: 53.7	양허율: 56.2 즉시 철폐: 13.8	양허율: 66.6 즉시 철폐: 16.0
	싱가포르	양허율: 100, 즉시 철폐: 100				
한 · EFTA	한국	양허율: 99.1 즉시 철폐: 86.3	양허율: 100 즉시 철폐: 92.3	양허율: 100 즉시 철폐: 45.5	양허율: 88.4 즉시 철폐: 27.1	양허율: 84.2 즉시 철폐: 15.8
	EFTA	양허율: 100	양허율: 100, 즉시 철폐: 100			양허율: 100 즉시 철폐: 35~55

주: 한 · EFTA FTA에서의 농산물 양허율은 가공농산물만 포함하고 있음. 한 · EFTA FTA에서의 재검토 항목, 한 · 칠레 FTA에서의 DDA 이후 재검토 항목 등을 양허에 포함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외교통상부

2) 공산품 양허내용

■ EFTA측은 양허율 100%에, 전 품목의 관세를 협정 발효 후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 EFTA측 공산품 MFN 평균 실행 관세율은 스위스(리히텐슈타인) 2.5%(종가세 환산치), 노르웨이 0.9%, 아이슬란드 2.6%이다.
- EFTA측의 주요 고관세 품목으로는 의류 및 직물, 귀금속제품, 각종 조제식품 등이다. 특히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 의류와 그 부속품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높은데 FTA 발효시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것이다.
  · 스위스의 고관세 품목(단위: 스위스프랑/100kg)으로는 진주 및 귀금속(71류, 3,999~233), 의류와 그 부속품(62류, 965~244),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속품(61류, 520~153), 가죽제품(42류, 271~188), 잡품(96류, 150~152), 특수직물의 자수포(58류, 292) 등이다.
  · 노르웨이의 고관세 품목으로는 의류와 그 부속품(62류, 14.8%),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61류, 11.3~14.8%), 단백질계 물질 · 변성전분 · 글루 및 효소(35류, 3.57~40크로네/kg) 등이다.

■ 우리나라는 양허율 100%, 즉시 철폐 91.1%, 5년 이내 철폐 98.3%, 최장 이행기간 7년으로 양허하였다.

- 우리나라는 9,404개 공산품 품목(임산물 포함)에 대해 100% 양허하였다. 가장 보호의 정도가 높은 7년 철폐 품목(132개)으로는 섬유판 등 목재(44류, 42개), 보일러 등 기계류와 부품(84류, 29개), 유기 · 무기 화학품(28 · 29류, 11개), 차량부품(87류, 7개), 화장품(33류, 3개), 의약품(30류, 3개) 등이다.
- 단 원유 및 석유제품 29개 품목(전체 비중 0.3%)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 일정을 제시하지 않되, 3년 후 재검토항목으로 분류하고 향후 다른 국가에

양허시 EFTA에도 동등대우하기로 하였다.

표 II-3. 우리나라와 EFTA의 관세율 비교

구 분	한국	스위스 ·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공산품	7.2%	2.5%*	1.9%	2.6%
수산물	18.2%	-	0%	0%

주: MFN 실행관세율의 단순평균임. 스위스의 경우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종가세로 환산한 수치임.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관세동맹임.
자료: 외교통상부

3) 수산물 양허내용

■ EFTA측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한 수산물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한 정도의 자유화를 용인하되 점진적인 관세 철폐를 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는 전체 406개 수산물품목 중 88.4%인 359개 품목에 대해 양허하고 민감품목인 김, 미역 등 해조류 47개 품목(11.6%)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고등어의 경우 5개 품목에 대해 양허하였는데, 냉동고등어 1개 품목에 대해서는 TRQ를 적용하여 매년 쿼터내 물량 500톤에 대해서 무세, 그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나머지 4개 품목에 대해서는 5년 내지 10년 철폐 품목으로 하였다.
- 연어의 경우 11개 품목에 대해 양허하였는데, 즉시 철폐 6개, 5년 철폐 4개, 10년 철폐 1개이다.[2)]
- 활어류의 경우 28개 품목에 대해 양허하였는데, 노르웨이의 관심품목인 연어 및 아이슬란드 관심품목인 송어 등 4개 품목은 즉시 또는 5년 철폐하

2) 참고로 한 · 칠레 FTA의 경우 對칠레 양허수준은 즉시 철폐 5개, 5년 철폐 5개, 10년 철폐 1개였음.

였고 기타 24개 품목은 7년내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 조정관세품목은 7개로서 냉동민어 등 5개 품목은 7년내 재검토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냉동새우 및 새우젓 2개 품목은 특정 어종(pandalus borealis)에 대해서 관세를 양허하였다.

■ 양측은 공동재원을 조성하여 수산분야 기술이전, 어업인 및 수산계 학생의 연수, 수산전문가 교류 등 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공동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4) 농산물 양허내용

■ 농산물의 경우, 상당한 정도의 공정과정을 거친 가공농산물은 FTA 본 협정에서 양허내용을 규정하고, 기본농산물의 양허내용은 별도의 양자협정을 통하여 규정하였다.

- 우리측 1,451개 농산물 중 스위스 34%, 노르웨이 46%, 아이슬란드 58%의 품목을 양허하였고,
- EFTA 국가들은 우리에게 스위스 51%, 노르웨이 61%, 아이슬란드 67%의 품목을 양허하였다.

■ 가공농산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체 305개 품목 중 84.9%에 해당하는 259개 품목에 대해 양허하였다.

- 인삼제품 등 민감품목을 제외하고 84.9%를 양허하였으며, 양허 균형을 전제로 EFTA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양허하였다. 물 관련 제품은 즉시 철폐하였으며, 주류, 커피는 10년 철폐, 그리고 190개에 달하는 가공식품류는 10~50% 관세 인하하기로 하였다.

■ EFTA측은 우리의 주요 관심 품목에 대해 양허하였다.

- 아이슬란드는 사과, 배, 쌀 발효주, 김치 등에 대해 무관세이며 버섯류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였다.
- 노르웨이는 김치에 대해 96% 관세 감축, 사과와 배는 계절관세를 부과하여 사과의 경우 12~4월, 배의 경우 12월~8월 10일까지 즉시 관세를 철폐하였다.
- 스위스는 김치와 쌀 발효주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사과와 배는 쿼터 또는 계절관세를 통해 일부 양허하였다.

■ 우리는 쌀, 육류, 낙농제품, 양념류 등 국내 농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품목은 대부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EFTA측의 주요 관심품목에 대하여 일부 양허에 반영하였다.
- 스위스의 경우 국내생산이 없는 치즈 4품목에 대해 쿼터(5년간 45톤, 6년째부터 60톤) 설정 후 10년 철폐, 포도주에 대해 10년 철폐하였다.
- 노르웨이의 경우 치즈(기타)에 대해 40% 관세를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아이슬란드에는 양고기에 대해 5년 철폐하기로 하였다.

5)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HS 6단위 267개 품목)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여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한국산 원부자재 등의 투입비용이 60% 이상인 경우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과 동일하게 대우하여 특혜관세를 부여받는다.
- 향후 개성 이외의 북한지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특례 인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나. 서비스 · 투자

■ 서비스 양허안은 DDA 서비스 2차 양허안 수준을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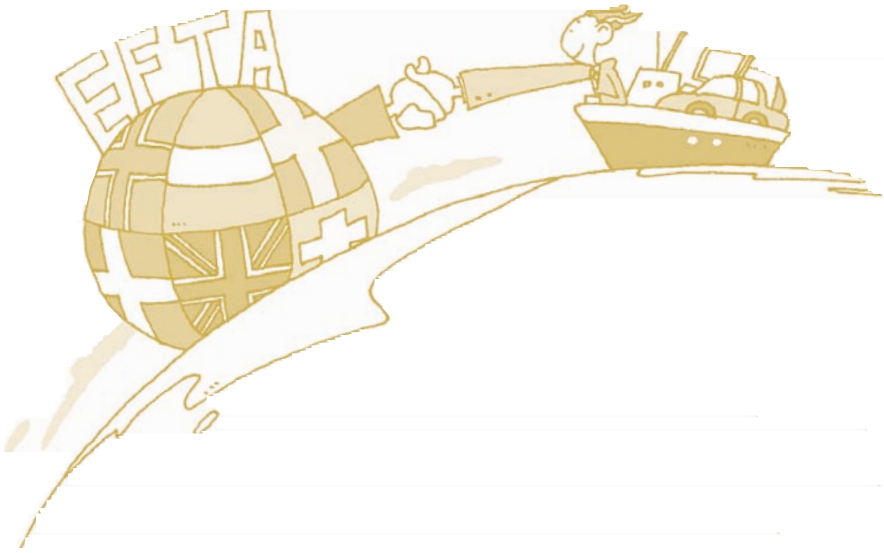
- DDA에 의한 서비스시장 개방에 앞서 한 · EFTA FTA에 의해 시범적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함으로써 향후 전면적인 시장개방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 및 해운 서비스의 부분개방이 포함되었다.
- 우리측은 WTO 서비스 분류 기준상 총 155개 세부업종 중 104개 분야를 양허한 DDA 제2차 양허안에서 3개 분야(빌딩청소업, 경영컨설팅, 전기용품 기술검사 및 분석서비스)를 추가 양허하였고, 전문기술직 분야의 계약서비스 공급자(1년 내)를 처음으로 양허함으로써 전문인력 교류의 시범적인 운영을 통하여 첨단산업 및 선진경영기법의 전수기회 확대에 기여하게 되었다.
- 특히 방송서비스의 경우 TV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방송 관련 프로그램의 EFTA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EFTA측도 DDA 제2차 양허안 수준으로 양허안을 작성하였고, 특히 스위스는 우리측 요구에 따라 미용 및 세탁 서비스, 보안컨설팅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개방수준을 확대하여 우리 관련 업체의 진출 확대가 가능해졌다.

■ 투자부문은 우리나라와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투자자 보호조항을 강화하는 등 투자 관련 규범을 정비하여, 한 · 싱가포르 FTA 및 한 · 일 BIT 수준의 투자자유화 및 보호수준을 확보하게 되었다.(노르웨이는 자국내 사정으로 인하여 투자협정에 참여하지 않았음.)

- 한 · 싱가포르 FTA 투자 유보안 수준으로 투자자유화 대상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 관련 규범을 정비하여 투자자에 대한 보호내용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 1971년에 체결된 스위스와의 일반 투자협정을 대체하는 높은 투자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수준의 투자협정을 마련하였다.

Ⅲ

EFTA에 대하여



Ⅲ. EFTA에 대하여

1. EFTA 소개
2. 우리나라와 EFTA의 경제관계

1

EFTA 소개

가. EFTA 설립 과정

■ EFTA는 1960년 관세동맹을 지향하는 유럽경제공동체(EEC)에 반대하여 7개 유럽국가, 즉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및 포르투갈이 독자적으로 FTA를 체결하면서 탄생하였다.

- 1960년 1월 4일에 스톡홀름 협정에 의해 창설되었는데, 처음에는 회원국 간 공산품 교역의 자유화를 추구하였으며 나중에는 어류 및 가공 농산품으로 자유무역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 1970년대 초반 EEC와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다.
- 후에 영국,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이 EU에 가입하는 등 회원국의 변동이 있어서 현재는 스위스(Swiss Confederation), 노르웨이(Kingdom of Norway), 아이슬란드(Republic of Iceland), 그리고 리히텐슈타인(Principality of Liechtenstein)으로 구성되어 있다.

■ EFTA는 2002년 6월부터 스톡홀름 협정을 대체하는 바두즈 협정(Vaduz Convention)을 통해서 회원국 내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지식재산권의 자유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확립하였다.

■ EFTA는 1990년대 이후 역외국과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추구하여 현재 세계에서 가장 폭넓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제동맹 중의 하나이다.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은 EU와의 유럽경제지역협정(European Economic Area: EEA)을 체결하였고, 이 협정이 1994년 1월부

터 발효됨으로써 사실상 EU와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 스위스는 EU와 일련의 양자간 협정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였다.
- EEA에서도 농산물, 해산물, 섬유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EFTA는 EU외에도 불가리아, 칠레, 크로아티아,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마케도니아, 멕시코, 모로코, 팔레스타인, 루마니아, 싱가포르, 튀니지, 터키 등과 FTA를 체결하여 적극적인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나. EFTA 경제 개황

■ EFTA는 세계 최고 부국들의 연합체이다.

- 2004년 기준 EFTA 4개국의 총 GDP는 6,220억 달러로서 세계 9위권(한국 7위)이며, 1인당 GDP는 PPP 기준 3만 2,979달러에 달한다.
- 총상품교역은 3,660억 달러로서 전 세계 교역의 2%(세계 9위, 한국 7위)이며 국민 1인당 수출액은 16만 498달러로서 주요 경제권역 중 최고수준이다. 총인구는 1,240만 명이다.



EFTA 중 하나인 스위스의 농촌풍경

- 평균 인플레이션율 0.8%, 실업률 4.1%, 평균 정부부채는 GDP의 47%에 불과하고 평균 정부재정 적자는 GDP의 2.7%의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2004년 상업적 서비스 수출액은 640억 달러(세계 5위, 한국 8위)이며, 해외투자(ODI)는 136억 달러, 외국인직접투자(FDI) 144억 달러에 달한다.
- IMD(2005)가 평가한 EFTA 국가들의 국가경쟁력지수를 보면 아이슬란드가 4위, 스위스가 8위, 노르웨이가 15위에 올라 있다. 한국은 29위이다.

■ EFTA는 오일 · 가스, 어류, 의약품, 시계, 기계류, 금융서비스, 해운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세계적인 국제금융센터로서 많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의약, 기계류, 시계 부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수산, 해운에 경쟁력이 있으며 노르웨이는 주요 산유국이다.

■ 스위스의 주요 수출입품목
- 주요 수출품: 기계류 27%, 약품류 10%, 시계 7%
- 주요 수입품: 기계장비 24.5%, 화학제품 17%, 운송수단 11.6%, 시계 · 보석 6.2%

■ 노르웨이의 주요 수출입품목
- 주요 수출품: 광산품 · 석유 63%, 어류 · 해산물 5%, 알루미늄 5%
- 주요 수입품: 기계 · 운송장비 37.4%, 도로 운송수단 8.3%, 전자 기계 5.1%

■ 아이슬란드의 주요 수출입품목
- 주요 수출품: 어류 · 해산물 48%, 알루미늄 20%
- 주요 수입품: 산업장비 24%, 자본재 23.1%, 운송수단 16.9%, 식음료 8.3%

*** 주요 EFTA 기업:** 『비즈니스위크』(2004년 7월)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에, 노바티스(의약, 세계 21위), 네슬레(식료, 25위), 로체 홀딩(의약, 29위), UBS(금융, 35위), 크레딧 스위스 그룹(금융, 115위), 스타토일(오일 · 가스 172위), 취리히 금융서비스(금융, 217위), 스위스컴(전화, 243위), 스위스레(보험, 254위), 노르스크 하이드로(에너지 · 탄광, 317위) 등 15개 기업이 속해 있음(참고: 한국 5개).

표 III-1. EFTA의 對세계 무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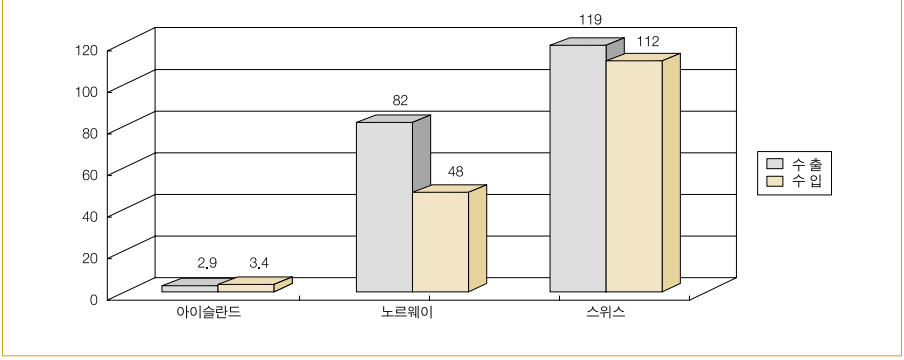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수 출	아이슬란드	2,014	2,228	2,378	2,887
	노르웨이	59,205	59,649	68,324	81,660
	스위스	82,057	87,967	100,773	118,700
	EFTA 전체	143,275	149,844	171,474	203,246
수 입	아이슬란드	2,092	2,092	2,603	3,423
	노르웨이	32,946	34,865	40,056	48,011
	스위스	84,065	83,772	96,535	111,777
	EFTA 전체	119,103	120,730	139,194	163,211
합 계	아이슬란드	4,106	4,320	4,981	6,309
	노르웨이	92,151	94,514	108,380	129,671
	스위스	166,122	171,739	197,308	230,477
	EFTA 전체	262,378	270,573	310,669	366,457

자료: EFTA 홈페이지(http://www.efta.int)

그림 III-1. EFTA의 對세계 무역(2004년)

(단위: 백만 달러)



■ EFTA 국가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 농업총생산은 2002년의 경우 8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의 1.7%이며, 농경지면적은 132만ha로 전체 면적의 약 2.8%에 불과하다.
- 농산물 총수출액은 28.3억 달러로서 전체 수출액의 1.9%이며, 수입액은 75.3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농산물 교역은 적자상태이다.
-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치즈, 조제식료품, 초콜릿, 담배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치즈, 닭고기, 콩, 상추, 밀, 설탕 등이다.

표 Ⅲ-2. EFTA의 농업 현황

구 분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합계
GDP(십억 달러)	267.4	191.8	8.4	467.6
-농업부문 비중(%)	1.6	2	9.8	1.7
인구(천 명)	7,171	4,514	287	11,972
-농가인구 및 비중(%)	445(6.2)	221(4.9)	24(8.2)	690(5.8)
국토면적(천ha)	4,129	32,388	10,300	46,817
-경지면적 및 비중(%)	436(11)	880(2.7)	7(0.1)	1,323(2.8)
수출액(백만 달러)	88,079	59,696	2,240	150,015
-농산물 수출액 및 비중(%)	2,315(2.6)	480(0.8)	35(1.6)	2,830(1.9)
수입액(백만 달러)	83,995	34,892	2,277	121,164
-농산물 수입액 및 비중(%)	5,161(6.1)	2,159(6.2)	205(9)	7,525(6.2)

주: 농림부
자료: 리히텐쉬타인은 스위스 통계에 통합

2

우리나라와 EFTA의 경제관계

가. 한 · EFTA 교역 현황

■ EFTA는 우리나라의 제20위 교역상대국이다.

- 우리나라 총수출 중 대EFTA 수출이 0.6%, 총수입 중 대EFTA 수입이 1.1% 차지하고 있다.

표 III-3. 우리나라의 對EFTA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11월
수 출	5,596	2,384	1,063	817	841	1,189	863	964
수 입	1,864	1,708	1,402	1,259	1,618	1,988	1,794	1,669
수 지	3,732	676	-339	-442	-777	-799	-931	-705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자동차, 선박 2대 수출품목이 전체 대EFTA 수출의 50.1%를 차지하고 있다.
- 산업기계, 정밀화학제품, 금속광물, 정밀기계 등 5대 분야 품목이 전체 수입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4. 우리나라의 對EFTA 품목별 교역 현황(2004년)

(단위: 천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 목	수출액	비 중	품 목	수입액	비 중
1	자동차	263,205	30.5	원동기및펌프	171,403	9.6
2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169,164	19.6	금은및백금	136,937	7.6
3	금은및백금	102,572	11.9	농약및의약품	108,296	6.0
4	무선통신기기	64,663	7.5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94,701	5.3
5	영상기기	42,886	5.0	계측제어분석기	83,933	4.7
6	고무제품	31,802	3.7	기타산업기계	81,877	4.6
7	의류	14,717	1.7	시계	69,272	3.9
8	컴퓨터	13,624	1.6	금속공작기계	69,052	3.8
9	플라스틱 제품	10,968	1.3	니켈제품	54,087	3.0
10	정밀화학원료	9,841	1.1	기계요소	53,070	2.9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와 EFTA 농수산물 교역 현황

- 2003년 기준 對EFTA 농림산물 수출은 270만 달러(농산물 수출총액의 0.1%), 수입은 1,550만 달러(수입총액의 0.2%)로서 농산물 교역은 적은 편이다.
- 교역규모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순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라면, 인삼엑스, 기타 목제품, 주요 수입품목은 초콜릿, 식물성 액즙, 사료첨가제 등이다.
- 2004년의 경우 주요 수출품은 면류(191만 달러), 기타 어류(16만 달러), 넙치(25만 달러), 인삼류(13만 달러), 대구(7만 달러), 기타 수산 가공물(6.5만 달러) 등이다.
- 주요 수입품은 기타 어류(3,417만 달러), 제조담배(444만 달러), 잎담배(408만 달러), 식물성 액즙(361만 달러), 수산 가공품(348만 달러), 초콜릿(328만 달러), 농산 가공품(172만 달러), 수산 부산물(125만 달러), 인삼류(116만 달러) 등이다.

표 III-5. 한 · EFTA 농산물 교역 현황(2003년)

(단위: 천 달러)

수 출					수 입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계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계
(농산물)	116	2,332	31	2,479	(농산물)	11,105	683	113	11,901
(축산물)	-	-	-	-	(축산물)	830	176	-	1,006
(임산물)	164	23	-	187	(임산물)	2,113	449	-	2,562
계	280	2,355	31	2,666	계	14,048	1,308	113	15,469

자료: 농림부

나. 투자 현황

■ EFTA의 對韓 투자는 1962~2004년간 478건, 13.4억 달러 규모로, 우리나라의 對EFTA 투자 대비 23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 EFTA 회원국 중 스위스가 對韓 투자에서 가장 활발하다.

- EFTA의 對韓 투자는 1962~2004년간 478건으로 총 FDI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1.2%이다.
- EFTA의 對韓투자 중 스위스가 84%를 차지(9.9억 달러)하고 있다. 누계기준 국가별 투자실적을 보면 스위스 367건, 9억 8,600만 달러, 노르웨이 60건, 1억 7,100만 달러, 리히텐슈타인 13건, 1,100만 달러에 달한다.
- 업종별 투자 현황(스위스 기준)은 건수 기준으로 도 · 소매업 139건(37.9%), 화공 37건(10.1%), 비즈니스서비스업 32건(8.7%), 전기 · 전자 30건(8.2%), 기계 및 장비 23건(6.3%), 식품 20건(5.4%) 등이다.

■ 한국의 對EFTA 투자는 상당히 부진한 가운데 스위스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다.

- 1968년 이후 누계 기준으로 對스위스 투자는 12건, 5천만 달러, 對노르웨이 투자는 6건, 740만 달러, 對아이슬란드 투자는 1건, 4만 달러이다.

표 Ⅲ-6. 한 · EFTA 연도별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신고 기준)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962~2004년
對韓 투자	151	27	48	185	27	173	1,341
건 수	30	41	30	27	30	38	478
對EFTA 투자	2.9	0.9	0.1	22.7	3.4	5.4	57.8
건 수	0	2	1	3	0	2	19

주: 대EFTA 투자 누계 실적은 1968~2004년 실적임

자료: 산업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부 록

한 · EFTA FTA 협정문 목차

PREAMBLE

CHAPTER 1 : GENERAL PROVISIONS
CHAPTER 2 : TRADE IN GOODS
CHAPTER 3 : TRADE IN SERVICES
CHAPTER 4 : FINANCIAL SERVICES
CHAPTER 5 : COMPETITION
CHAPTER 6 : GOVERNMENT PROCUREMENT
CHAPTER 7 : INTELLECTUAL PROPERTY
CHAPTER 8 : INSTITUTIONAL PROVISIONS
CHAPTER 9 : DISPUTE SETTLEMENT
CHAPTER 10 : FINAL PROVISIONS

ANNEX I REFERRED TO IN ARTICLE 2.2
RULES OF ORIGIN AND CUSTOMS PROCEDURES
Appendix 1 to Annex I Introductory Noes to the list in Appendix 2
Appendix 2 to Annex I List of working or processing required to be carried out on non-originating materials in order that the product manufactured can obtain originating status
Appendix 3 to Annex I Text of the Origin Declar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5
Appendix 4 to Annex I Exemptions From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ANNEX II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1.2
TERRITORIAL APPLICATION

ANNEX III PRODUCTS REFERRED TO IN PARAGRAPH 1(a) OF ARTICLE 2.1

ANNEX IV REFERRED TO IN PARAGRAPH 1(b) OF ARTICLE 2.1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ANNEX V REFERRED TO IN PARAGRAPH 1(c) OF ARTICLE 2.1
FISH AND OTHER MARINE PRODUCTS

ANNEX VI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2.3
CUSTOMS DUTIES
Appendix to Annex VI

ANNEX VII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ARTICLE 3.16
SCHEDULES OF SPECIFIC COMMITMENTS
Appendix 1 to Annex VII Korea
Appendix 2 to Annex VII Iceland
Appendix 3 to Annex VII Liechtenstein
Appendix 4 to Annex VII Norway
Appendix 5 to Annex VII Switzerland

ANNEX VIII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3.4
LIST OF MFN-EXEMPTIONS
ICELAND, LICHTENSTEIN, NORWAY, SWITZERLAND

ANNEX IX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ARTICLE 3.9
MUTUAL RECOGNITION

ANNEX X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ARTICLE 3.16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NEX XI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ARTICLE 3.16
CO-PRODUCTION OF BROADCASTING PROGRAMS

ANNEX XII REFERRED TO IN ARTICLE 6.2
"CONTACT POINT" REGARDING GOVERNMENT PROCUREMENT

ANNEX XIII REFERRED TO PARAGRAPH 1 IN ARTICLE 7.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JOINT DECLARATION

DECLARATION BY KOREA AND SWITZERLAND ON MEDICAL DEVICES

RECORD OF UNDERSTANDING
RELATING TO THE FREE TRADE AGREMENT BETWEEN THE EFTA STATES AND KOREA

※ 별도 협정문(농업, 투자)

AGREEMENT ON AGRICULTUR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ICELAND

ANNEX I Tariff Elimination and Reduction Schedule of Korea to Iceland on Basic Agricultural Products
ANNEX II Iceland's Concessions to Korea on Basic Agricultural Products

AGREEMENT ON AGRICULTUR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NORWAY

ANNEX I Tariff Elimination and Reduction Schedule of Korea to Norway on Basic Agricultural Products
ANNEX II Norway's Concessions to Korea on Basic Agricultural Products

AGREEMENT ON AGRICULTUR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SWITZERLAND

ANNEX I Tariff Elimination and Reduction Schedule of Korea to Switzerland on Basic Agricultural Products
Appendix to Annex I
ANNEX II Switzerland's Concessions to Korea on Basic Agricultural Products

AGREEMENT ON INVEST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CELAND, THE PRINCIPALITY OF LIECHTENSTEIN AND THE SWISS CONFEDERATION

ANNEX I Referred to in Article 12
Reservations by Korea
ANNEX II Referred to in Article 12
Reservations by Iceland
ANNEX III Referred to in Article 12

Reservations by Liechtenstein
ANNEX IV Referred to in Article 12
Reservations by Switzerland
ANNEX V Referred to in Article 12
Reservations by the EFTA Parties

※ 한 · EFTA FTA 협정문(영문)은 홈페이지(www.fta.go.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
FTA지역교섭과
전화: 02)2100-8127 FAX: 02)2100-8097
http://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
전화: 02)3460-1036 FAX: 02)3460-1023
http://www.kiep.go.kr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3460-1036 FAX: 3460-1023
Http://www.kiep.go.kr